

등록금 분할납부 운영(안) 및 신청안내

1. 분할납부 신청방법

- 가. 분할 회수 : 2회, 3회, 4회 중 택 1
- 나. 분할납부 신청 불가항목
 - 입학금 및 기타납입금(의료상조회비, 학생회비)
- 다. 분할납부 신청기간

구분	신청기간	비고
신청	2017년 12월 26일 10:00 ~2018년 1월 9일(화) 23:59	

라. 분할납부 등록기간

구분	등록기간	비고
1회차	2018.01.03.(수)~01.09.(화)	각 일자별 09:00 ~ 23:59 등록가능
2회차	2018.02.05.(월)~02.09.(금)	
3회차	2018.03.05.(월)~03.09.(화)	
4회차	2018.04.09.(월)~04.13.(금)	

마. 신청 및 변경 절차

- 카이스트 포털에서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
 - 카이스트 포털(<http://portal.kaist.ac.kr>) -> 학사시스템 -> 등록/장학 -> (새창) -> 등록 -> 분납신청 -> “납입금 분납신청/취소”(개인납부/기관납부 모두 가능)

바.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

- 분할등록기간 중 카이스트 포털(<http://portal.kaist.ac.kr>) -> 학사시스템 -> 등록/장학 -> (새창) -> 등록 -> 분납신청 -> “분납고지서 출력”

2. 분할납부 처리방법

- 가.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
- 나.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되며, 추가 등록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.
- 다. 1회차를 납부하고 2회차 또는 3회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회차 또는 4회차 납부기간에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 가능
- 라. 총 2회 미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,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
- 마. 1회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
 - 1)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
 - 2)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.
- 바. 1회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함.
- 사. 분할납부 최종등록 기한까지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,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.

문의처 : 학적팀 042-350-2366

2017. 12. 11.

KAIST 교 무 처 장